



#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1호 2024. 1. 5(금)

선 람	기관의 장

##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3-7호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 남원시 공고 제2023-11호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11
- 남원시 공고 제2023-12호 『남원시 공영장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25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공고 제2024- 7호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남 원 시 장

##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제고 및 지적 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경계결정을 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한 안건의 자동폐기 내용 삭제  
- (안 제8조제3항)
- 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삭제  
- (안 제10조제3항)

3. 입법예고기간 : 2024. 1. 3. ~ 2024. 1. 23. (20일간)

###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4년 1월 23일까지 의견

서를 남원시장(참조: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70 / 남원시 시청로 60, 민원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fax(063-620-6705) 및 직접 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민원과 (☎063-620-6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3.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민 원 과 장

### 1.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제고 및 지적제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경계결정을 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한 안건의 자동폐기 내용 삭제  
(안 제8조제3항)
- 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10조제3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적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 ~ 2024. 1.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완료
  - 4) 성별영향평가: 완료
  -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④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면장·동장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자치법규 명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공고 제2024 - 11호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일

## 남 원 시 장

##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지원대상, 용자조건, 지원 한도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 다.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 지급 방법 (안 제6조, 안 제7조)
- 라. 환수 및 지원 중지, 지도·감독 규정 (안 제8조~안 제10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1. 2. ~ 2024. 1. 22.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농정과 농정기획팀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마감일 소인 유효), Fax(063-620-6713)  
이메일(kmj326619@korea.kr)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업지원과(063-620-6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붙임**

##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3.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농 정 과 장

### 1. 개정이유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지원대상, 용자조건, 지원 한도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 다.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 지급 방법 (안 제6조, 안 제7조)
- 라. 환수 및 지원 중지, 지도·감독 규정 (안 제8조~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2. ~ 2024. 1. 22.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붙임
  - 3) 규제예비심사: 완료
  - 4) 성별영향평가: 완료
  -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의 주민소득사업의 이차보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농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보전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농어·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일 것  
제4조(융자 조건)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수도작, 원예, 특작, 축산, 산림, 수산, 유통 및 식품가공 분야의 생산소득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에 해당되는 사업

제5조(이자보전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은 농어업경영융자금의 이자에 대하여 자  
부담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3퍼센트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  
도로 하되, 이차보전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이차보전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차보전지  
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제3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이차보전지원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금융기관에 직접 지  
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려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  
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이차보전지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이차  
보전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및 지원중지) 시장은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  
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사망, 전출,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이차보전지원을 받은 자는 농어업경영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상환기간 전에 상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지원의 규모, 조건,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의 상환 완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자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주소					
	영농 경력		연락처			
신청 내용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 규모	
	사업대상지					
	사업비 (천원)	계	용자		자부담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남원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1. 현황

영농규모 (m <sup>2</sup> )	구 분	논	밭	과 수 원		계
	소 유					
	임 차					
	계					
재배현황 (m <sup>2</sup> )	벼	사 과	배	포 도		계
가축사육 규모(두,수)	한 우	돼 지	닭			계

##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 세부사용내용

세부사업명	규 격	단 가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합 계	용 자	자부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별지 제2호서식]

**이차보전금 지급 청구서(제7조제2항 관련)**

# 시 보

년도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대출된 용자금의 이자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남 원 시 장 귀하

## 용자금 이차보전금 청구내역

(단위 : 원)

채 무 자		용 자 금		산출내역		이 차 보 전 금 및 청구액
주 소	성 명	일 자	금 액	원 금 잔 액	기 간 이 율(%)	
계						

##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함.

○ 관련조문

-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이차보전 지원)

###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농업인 이차보전금 지원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30,000천원 [※ 2024년도 전체 예산]

- 농업인 이차보전금: 30,000천원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천원)

연도	합계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 비용	300,000	30,000	60,000	90,000	120,000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300,000	30,000	60,000	90,000	120,000	

###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농정과장 조대성

## 붙임

## 관련 법규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b>남원시장 귀하</b></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공고 제2024 - 12호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일

## 남 원 시 장

##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故人)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공영장례 지원대상 규정 (안 제4조)
- 다. 공영장례 지원내용 및 방법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 라. 지원신청 및 결정 규정 (안 제7조)

## 3. 입법예고기간 : 2024. 1. 4. ~ 2024. 1. 24. (20일간)

##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노인장애인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auspicious@korea.kr), fax(063-620-6769)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노인장애인과(☎063-620-6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안**

##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4.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노인장애인과장

## 1. 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故人)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공영장례 지원대상 규정 (안 제4조)
- 다. 공영장례 지원내용 및 방법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 라. 지원신청 및 결정 규정 (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 ~ 2024. 1.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완료
  - 4) 성별영향평가: 완료
  -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故人)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4. “공영장례”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장례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
5. 검사의 검시(檢屍)를 마친 변사자
6.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에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수의, 관, 운구비, 안치비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2. 화장 및 봉안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수급자의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레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및 장레를 실제 행하는 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장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및 환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레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장레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공영장레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신청인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사망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장례수행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장례일자		장례방법	
신청사유				
<p>「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b>남원시장 귀하</b>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수수료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없음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뒷면)

## 공영장레 지원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 동의서

남원시는 공영장레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고 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공영장레 지원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계좌번호	공영장레 지원	3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중요·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애등급, 생년월일	공영장레 지원	3년

※ 위의 중요·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별지 제2호서식]

##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 (제7조제2항 관련)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망자와의 관계			
결정내역	사망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		
	장례수행자			
	지원사유	<input type="checkbox"/>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 붙임 관계 법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2023. 3. 28.>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

**「남원시 공영장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b>남원시장 귀하</b></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